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연구 자료

유럽연합(EU) 농업환경정책의 전개

최정섭* 김성용**

1. 서론
2. EU 농업환경정책의 성립
3. 주요 농업환경정책의 내용: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중심으로
4. EU 농업환경정책의 전망
5. 함축성

1. 서 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EU 환경법(797/85호 제 19조, 2328/91호 제 21조, 2078/92호)¹에 기초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EU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问题是 대기 및 수질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토양침식 등 세 가지이다.

지구환경의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U는 1992년 개혁된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하에서 다양한 환경보호적 생산방식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 자료는 농업환경정책 분야에서 선구자인 EU의 다양한 환경정책수단들을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환경정책의 성립과정, 주요 농업환경정책의 내용과 운용방식, 그리고 EU 농업환경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등이다. 환경문제는 인접국이나 멀리 떨어진 국가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환경정책은 우리 나라 농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요한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공동지침을 제정하여 환경정책을 시행해 온 EU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¹ EU의 환경법은 규칙(Regulation)이나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원국의 비준 없이도 법률이 된다. 반면 지침은 각 회원국에 대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면에서 농업환경조치는 대개 규칙의 형태로 입법화되어 각 회원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 부연구위원

** 연구원

2. EU 농업환경정책의 성립

1960~70년대 유럽의 환경문제는 주로 공업부문에서 야기된 공해나 자연파괴 등에 국한되었다. 자연의 자정능력 한계 내에서 농사를 짓던 전통적 농업의 경우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집약적 농업생산에 의한 환경오염이 주된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 즉 농약 및 비료의 과다 투입, 가축 사육 및 농업 생산의 집약화는 토질 악화, 수질 및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농산물 안전성 위협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시켰다. 또한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영농기피와 대량 이농으로 인해 농지가 황폐화되고 농촌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전개에 따라 EU는 농업환경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초기단계의 환경정책은 구조정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농업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정책은 별도로 분리되고 그 내용도 다양해졌다.

2.1 제1차 환경실천프로그램과 조건불리지역의 환경보전 지원

농업환경정책은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북부유럽은 생태계 및 야생서식지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남부 유럽은 토지유기(遺棄) 및 농촌사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한계농의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환경정책은 지역적·물리적 특성, 오염통제비용 등에 따라 달라

졌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국토보전을 위해 '권역화(Zoning)'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토의 4할에 달하는 지역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독일에서는 야생동물이 서식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법'을 제정하였다.

EU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결과 1973년에는 제1차 환경실천계획²이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농업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1973년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인 '공동농업정책의 개선'에서는 "지금까지의 공동농업정책은 환경보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은 이에 대해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공동체 차원에서 농업의 환경적 영향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975년의 '산악지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지침(Directive 75/268)이다. 이 지침의 전문은 "산악지 및 조건불리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각 회원국에서 이미 채택되고 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

² 제1차 환경실천계획(1973~76년)의 수립을 계기로 EU는 환경문제를 회원국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프로그램은 ① 대기오염의 방지 및 감소 ② 환경 및 공동체내 삶의 질 향상 ③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체와 국제조직과의 연계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수행되었다. 그 후 4차례에 걸친 환경실천계획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약 200여개의 환경관련법이 채택되었다. 현재는 환경문제가 모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조업, 에너지 산업, 농업, 운송업,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의 자발적 합의 또는 자율 규제를 장려한다는 취지의 제5차 환경실천계획이 1993~2000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은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근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환경보전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민을 보조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조방적 농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연공간을 보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입법 동기가 산악지 및 소외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유지케 함으로써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자국에 알맞은 환경측면에서 해석하여 국내법으로 전용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 지침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는 국내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와 구서독은 전통적인 농법을 지키기 위해 이 지침을 사용해 왔다.

2.2 구조지침의 제정과

환경민감지역(ESA)의 조성

1984년 농업각료이사회는 구조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안서’를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농업은 식량공급과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 1985년 EU 구조지침 (Directive 797/85)이 제정되어 동지침 제19조에 “환경, 자연자원, 자연공간 및 경관의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생산방법의 유지 및 도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포함됨으로써 ‘환경면에서 신중을 요하는 지역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의 조성제도가 마련되었다³.

지금까지 공동농업정책에 나타난 환경정책은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s: LFA)에 대한 환경보호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지침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생태계 및 전원지역의 보전을 위한 농업 및 농법의 가치가 인식된 것이 특징이다. ESA는 LFA 가운데 “특별히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고 있는 기타 소지역”에 해당된다. 각 회원국이 제1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SA를 지정하고, 환경 조화적 생산방법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은 ESA로 지정되어 농민에게 농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부여되며 그 제약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농민에게 보조금이 지불된다⁴. 예를 들면 야생조류가 새끼를 기르는 봄철에는 목초지의

³ 지침 797/85호는 1991년 7월 15일 지침 2328/91호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797/85호의 제19조 환경관련조항은 새로운 지침의 제21조에 수록되어 있다.

⁴ 영국에서 ESA로 조성된 지역의 농민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활동이 제약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된다. 제약이 비교적 적은 제1단계에서는 농민에게 ha당 82파운드. 제약이 큰 제2단계에서는 ha당 120파운드의 보조금이 지불된다. 농업활동에 대한 제약내용을 보면 제 1단계에서는 ①목초지의 경우 경운·정지·재파종의 금지, 현행 사용량 이상의 무기질 비료 사용금지, 농약 및 제초제 사용금지 ②모든 토지에 대해 전통적 방법에 의한 산울타리 및 수목의 유지, 역사적 유물의 유실 금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수로의 유지 등이다. 제 2단계에서는 ① 목초지의 경우 3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써레질 및 로울러의 사용 금지, 1년간 ha당 1.2 LU(livestock unit)이상의 소, 양의 사육 금지, 질소 25kg, 칼리 및 인산 12.5kg 이상 투입금지 ② 모든 토지에 대해 배수을 위한 표층파이프 설치의 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和泉眞理, 1989)

표 1 ESA 지원실적, 1992

단위: ha, 인

구분 회원국	총 지정면적	보조금 수혜면적	보조금 수혜농민	수혜농가당 지정면적
덴 마크	127,970	n.a.	3,459	8.11
독 일	2,560,000	13,000	40,780	7.15
프 랑 스	114,620	83,000	n.a.	n.a.
아일랜드	1,140	n.a.	n.a.	n.a.
이탈리아	944,430	820,740	6,038	37.98
룩셈부르크	2,800	600	4	10.00
네덜란드	75,800	27,000	5,013	5.34
영 국	740,930	396,570	4,997	56.50
총 계	4,567,690	2,550,910	60,291	14.23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3.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서독의 경우), 식생의 보호를 위해 습지의 관개를 금지하는 농민에 대해 보조를 하는 경우(덴마크의 경우) 등이다.

ESA는 회원국 농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과 운용방법이 달랐다. 즉 영국의 ESA는 전통적인 경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는 동식물 보호를 위한 습지대 등 소생태권(bio-tope)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영국에서 ESA로 지정된 지구는 63개에 달 하며 지정된 지구의 면적은 작게는 2,700ha부터 크게는 90,000ha에 이르며 대부분이 자연보호제도 하에서 보전대상이 된 목초지이다. 독일에서는 주정부가 ESA를 지정한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부가 각 주에 지정면적을 정하는데 전체 133지구에 면적은 47,300ha에 달한다. 각 주는 소생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관심이 되는 지구를 총면

적의 4% 범위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를 지구는 주로 영구초지로 자연보호지구에 이미 속해 있거나 새로 편입된 것이다(是永東彦, 1993).

1992년 EU의 ESA 조성실적을 보면 8개 회원국에 총 457만ha가량이 농업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255만ha가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표 1).

ESA 조성제도는 농민의 자발적 참가에 의존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농업생산방법의 제한만을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어 경작포기지역이나 산림 등은 집행위원회의 심사기준에서 배제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ESA는 토지등급과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편중되어 지정지역 내의 열등농가에 대한 소득보상위주로 운영되었다(和泉眞理, 1989). 프랑스에서는 소생태권 보호이외에 많은 지역에서 농업쇠퇴와 농지황폐로 인한 전통적인 경관의 붕괴를 방지

하려 했지만 경작포기지구나 산림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료, 농약사용량의 삭감을 요구하여 남부지역의 농업여건에는 부적절하였다 (是永東彦, 1993).

ESA를 지정할 때 아름다운 경관과 습지 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지정지역의 확대에는 한계가 따랐다. ESA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농산물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 정책은 지역지정이라는 제약을 넘어 농업지대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3 CAP 개혁과 환경보호적 생산방식에 대한 지원 규칙의 제정

1992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통하여 직접적인 환경보호 조치가 농업정책의 일부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개혁안의 부속조치에 환경보호와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한 농업생산의 조방화와 환경보호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증액, 새로운 조림사업의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1992년 규칙 2098/92호가 입법화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자연경관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농업생산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에 의해 마련된 농업환경정책은 환경관련 정책인 휴경조치 및 생산조방화 조치⁵ 등을 망라한 것으로 농업지대 전역을 적용

⁵ EU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농민들이 경작지의 20%를 최소 5년 동안 휴경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는 휴경제도와 이와 연계되어 추진된 조방화 조치가 시행되어 왔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5년 동안의 휴경은 공

범위로 삼고 있다. 이전까지의 환경정책이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며 회원국들의 선택사항이었던 점을 반성하여 이 조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시행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3. 주요 농업환경정책의 내용: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중심으로

3.1 환경 보호적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지원

3.1.1 정책목표와 수단

199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와 경관유지에 적합한 농업생산방법에 관한 이사회규칙(Regulation 2098/92)」에는 지원제도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금액, 공동체 지원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동규칙 제1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공동체 지원제도를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 ① 공동시장조직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 ② 농업과 환경에 관한 공동체의 정책 목표 달성을 기여한다.

공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휴경으로부터 제외된 농경지에서 더욱 집약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환경정책적 의미가 미약하다. 이에 따라 1992년 농업환경조치에서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할 경우 휴경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다.

⁶ OJ No. L 215, 30.7.92, p.86.

③ 농민의 적정한 소득 확보에 기여한다. 주요한 정책수단은 영농방식의 규제, 휴경 및 생산의 조방화, 농용지 보전 및 이용개선, 교육 및 훈련 등이다.

3.1.2 지원 대상

규칙 제2조는 환경보호 및 경관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생산방식이나 조치를 적어도 5년동안 이행하는 농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수혜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생산방식은 다음과 같다⁷.

① 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을 상당히 감소시키며 기존에 행해진 사용량의 감소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또는 유기적 영농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② ①이외의 방법에 의해 보다 조방적 형태의 경종생산(사료생산 포함)으로 이행하거나, 과거에 도입된 조방적 생산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또는 경지를 조방적 초지로 전환하는 경우

③ 조사료 면적당 양 및 소의 사육두수를 감축시키는 경우

④ 기타 환경 및 자원 보호, 경관의 유지 요청과 양립하는 다른 생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멸종할 우려가 있는 지방적 품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⑤ 경작 포기된 농지 또는 산림을 보존하는 경우

⑥ 환경관련 목적의 이용, 특히 소생태권의 보존 및 자연공원의 설치 또는 용수 순환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농용지를 적어도 20년간 휴경시키는 경우

⑦ 공공이용 및 여가 활동을 위해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3.1.3 지원 금액

보조금은 동규칙 제2조에 언급된 농민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어도 5년 동안 이행하는 농민에 대해 매년 ha당, 또는 가축단위당 지급된다. 휴경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행 의무기간은 20년이다.

환경보전방식의 유형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 한도액은 <표 2>와 같다. 경종작물은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의 사용을 상당히 줄이고 조방적 영농을 할 경우, 배수, 관개, 목초지 개간 등 환경에 해로운 관행을 중지할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ha당 단년생 작물은 150ECU, 목초지 250ECU, 감귤류 1,000ECU, 기타 다년생 작물 및 포도의 경우는 700ECU가 지불된다. 축산은 양과 소의 사육두수를 감축할 경우 감축 두수당 210ECU가 지급되며, 멸종할 우려가 있는 가축품종을 사육할 경우는 사육두수당 100ECU가 보조된다.

농촌지역의 유휴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민 또는 비농민들이 경작포기된 농지나 임야를 유지할 경우 ha당 250ECU가 지불된다. 동식물의 소생태권이나 소규모 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 농경지를 휴경하는 경우는 ha당 600ECU가 지불된다.

환경에 양호한 영농방법이나 유기적 농법과 양립하는 생산방식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자에게 수당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훈련과정의 조직화나 실시에 필요한 비

⁷ ibid., pp.86-97.

표 2 환경보전 및 경관유지에 대한 보조금의 지불 내역

환경보전 방식의 유형		지불한도액
조방화 및 환경보전적 생산방식의 도입	직접지불대상의 단년생작물	150ECU/ha
	기타 단년생 작물 및 목초지	250ECU/ha
	양 및 소의 사육두수 감축	210ECU/LU
	멸종할 우려가 있는 가축품종의 사육	100ECU/LU
	전문화된 올리브 농장	400ECU/ha
	감귤류	1,000ECU/ha
기타 단년생 작물 및 포도		700ECU/ha
경작포기된 농지 및 임야의 유지		250ECU/ha
동식물의 소생태권이나 소규모 자연공원의 조성을 위한 20년간의 환경적 휴경		600ECU/ha
지역조건에 적합하고 멸종할 우려가 있는 유용한 식물재배 및 보급		250ECU/ha
환경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		2,500ECU/명

주: 가축단위(Livestock Unit: LU)는 축종별 마리수를 환산하는 단위이며 축종별 환산기본 단위는 2살이상인 소가 1.0LU, 6개월에서 2살 미만인 소는 0.6LU, 암양이 0.15LU, 염소가 0.15LU 등임.

용을 보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훈련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1인당 최고 2,500ECU이다.

EU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의 지도부문을 통해서 개별 회원국이 환경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재정지원비율은 “개발이 낙후되어 발전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목표 1)”의 경우는 소요액의 75퍼센트,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소요액의 50퍼센트이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환경프로그램이 본 규칙의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해진 보조금의 지불한도를 초과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1.4 평가 및 전망

각 회원국들이 동규칙의 시행을 위해 1993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모두 177개인데 그 중 12개는 중앙단위, 165개는 지역단위 계획이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EU 집행위원회는 1997년까지 전체 농용지 이용면적의 약 7퍼센트인 11.6백만ha 정도가 이 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소요액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간 3,985백만ECU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표 3). 소요액의 55%인 2,191백만ECU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에서, 나머지 1,794백만ECU는 개별회원국에 의해 지원된다. 다양한 환경보호 조치 중에서 농촌

표 3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계획, 1993-97

단위: 백만ECU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EAGGF에 의한 지출	79	210	387	606	909	2,191
-투입재 감축/유기농법/조방화	5	22	45	73	111	256
-환경에 양호한 영농	16	66	134	216	330	762
-경관유지	18	77	156	252	385	888
-농지의 조림화	40	45	52	65	83	285
개별 회원국에 의한 재정지출	65 (45.0)	172 (45.0)	317 (45.0)	496 (45.0)	744 (45.0)	1,794 (45.0)
총 계	144	382	704	1,102	1,653	3,985

* 팔호안은 총지출에 대한 회원국 지출의 비중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1. 7.

의 경관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2 조림사업 지원

3.2.1 농용지 조림에 대한 지원

농용지 조림에 대한 지원은 '농업구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칙' (Regulation 2328/91)의 제25조 '농용지에 대한 조림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규칙의 전문에 조림정책은 '토양의 보전 및 향상, 동물 및 식물군(群)의 보호, 지표수 및 지하수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림 지원이 갖는 환경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원제도는 농경지의 조림에 따른 농민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고 휴경농지의 조림을 장려하기 위해 조림면적당 보조금을 지불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포기로 인한 경관의 악화를 방지하며, 농업생산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노동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 지원제도의 목적이 있다.

농용지의 조림 지원은 ① 조림비용에 대한 지원 ② 조림유지비용에 대한 지원 ③ 농지 조림으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지원 ④ 삼림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 등으로 나누어 진다. 지원대상은 휴경농지를 조림하는 농민, 산림조합, 기타 단체 등이다. EU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을 통해 1993~1997년 까지 5년간 농지의 조림화에 대해 285백만 ECU를 지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농용지를 조림하는 농민에 대해 지불되는 보조금은 지원사업별로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표 4 참조).

조림 지원프로그램은 권역별 조림계획(Zonal

표 4 농용지 조림지원사업의 내용별 보조금 지불 한도액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지불한도액
조림비용 지원		침엽수 조림비용 지원	3,000 ECU/ha
		활엽수 조림비용 지원	4,000 ECU/ha
삼림관리비용 지원	침엽수의 삼림유지	처음 2년간	250 ECU/ha
		차후 년도	150 ECU/ha
	활엽수의 삼림유지	처음 2년간	500 ECU/ha
		차후 년도	300 ECU/ha
삼림개선 투자 지원	삼림개량 및 방풍림 조성		700 ECU/ha
	코르크나무 삼림지의 재조림 및 개량		1,400 ECU/ha
	임도의 건설		8,000 ECU/km
	방화림 및 방화수의 조성		150 ECU/ha

자료: Agra Europe, 1992.6

Afforestation Plan)에 따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된다. 회원국들에 의해 제시된 프로그램은 상임산림위원회(the Standing Forestry Committee)의 견해를 청취한 후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① 조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 ② 조림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 ③ 기타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④ 조림시 준수해야 할 산림 계획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한다.

3.3 산림에 대한 보호

3.3.1 산림 생태계 기초정보 수집 조치 (Regulation 2157/92)

산림 훼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림 생

태계에 대한 기초정보와 산림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영구적인 관측망의 수립을 목적으로 다년 프로그램 (multi-annual programme)이 1987년부터 10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에 해를 끼치는 오염원(특히 대기오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원의 조사에 필요한 관측망을 수립하며, 산림 생태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1992년의 경우 420만 ECU를 회원국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1992~1996년까지 5년간 재정 지원 소요추정책은 2,940만 ECU이다.

3.3.2 산불로부터의 산림 보호 조치 (Regulation 2158/92)

EU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보호하고, 산

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불로부터의 산림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치의 주요 목적은 산불발생 건수를 줄이고 산불 발생 가능지역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불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 산불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임도·방화수·방화림 등 산림보호를 위한 하부구조 시설의 구축, 통신장비 등 산림 통제시설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활동 등이다.

회원국의 산림보호계획을 제출받은 집행위원회는 상임산림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회원국의 산림보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각 회원국은 매년 11월 1일까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의 현황, 과거 5년간 산불 발생 건수 및 발생 요인, 예상되는 목적 달성을 포함된다.

산림보호에 대한 재정지원은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 영구적 산불발생 위험 지역의 경우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소요 경비의 50% 이내, 산림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불발생 지역은 소요 경비의 30% 이내, 기타 산불발생 지역은 소요 경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산불로부터의 산림 보호사업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소요추정액은 1992년부터 1997년 까지 5년간 7,000만ECU이며 1992년의 경우 1,200만ECU가 지원되었다.

3.4 유기농산물 기준제정 및 생산장려

3.4.1 유기농산물 기준의 제정

유기농산물 기준은 EU의 기준, EU회원

국의 기준, 회원국의 유기농업단체가 정한 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은 1989년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통일된 EU기준으로 집약되어 1991년 농업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에 관한 이사회 규칙 (Regulation 2092/91)'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EU 규칙에는 표시, 생산, 인증, 수입, 역내 유통 등이 규정되어 있다. EU는 유기농법을 통하여 환경 보호적인 농업생산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 생산 억제와 농산물의 수급 균형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규칙 제12조에서 회원국은 유기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 및 표시 방법을 이유로 이 규칙을 만족하는 생산물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기 농산물이 통일된 규칙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회원국의 기준 또는 각 회원국의 유기농업단체가 정한 기준이나 표시방법의 차이 때문에 유기 농산물을 차별화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기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기 농산물이라는 표기는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가공, 보존, 포장 등의 과정에서 특정 물질만을 사용하고 방사선 처리나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허용된다. 유기 농산물 기준이 허용하고 있는 비료 및 농약 성분은 <표 5>와 같다. 관행적 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중에는 '전환중의 유기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유기농법으로의 전환기간이 수확전 최저 12개월, 파종 전 2년 이상, 다년생 작물의 경우 첫 수확전 전환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이에 해

표 5 EU 유기 농산물기준이 허용하고 있는 비료 및 농약 성분

비료(토질개량제 포함)	농약
퇴비류	Derris elliptica로부터 조제된 약품
슬러리	Quassia amara로부터 조제된 약품
건초	Ryania로부터 조제된 약품
泥炭(Peat)	밀랍(Propolis)
식품 및 섬유산업의 유기부산물	규조토(Diatomaceous earth)
해초 및 해초생산물	황(Sulphur)
石灰(Rock pocash)	보르도액(Bordeaux mixture)
톱밥(Sawdust, bark and wood waste)	버건디액(Burgundy mixture)
木灰(Wood ash)	물유리(Sodium silicate)
자연 磷灰石(Natural phosphate rock)	중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알루미늄	포타슘(Potassium soap)
磷灰石	페로몬 약품(Pheromone preparation)
마그네슘암	동식물성 오일
황산마그네슘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미량원소(구리, 철, 망간, 아연 등)	
*황(Sulphur)	
점토(벤토나이트, 펄라이트)	

주: *는 검사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성분임.

자료: OJ No. L 198, 22.7.91, pp.10-11.

당한다.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승인하면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3.4.2 유기농산물의 생산 장려 및 인증

유기 농산물에 관한 규칙은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유기농업을 총괄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8조의 내용에 의하면 판매목적으로 제1조(유기농산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생산물을 생산, 유통, 수입하는 자는 회원국 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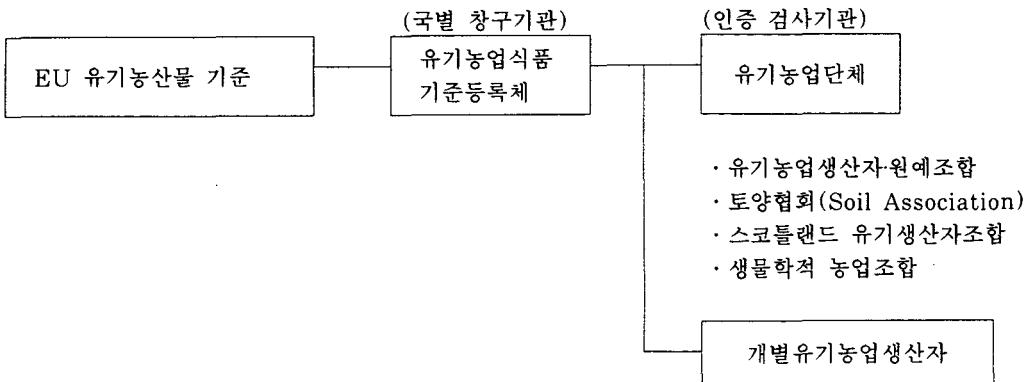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하거나 공인된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림1 참조). 인증기관은 검사를 받은 농민 또는 유기농업단체들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자는 '유기'라고 표시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인증결과 보고서에는 저장, 생산시설, 토지, 가공 및 포장이 이루어지는 장소, 생산방법, 허가 물질의 사용과 최후 사용일, 생산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농업생산 활동의 성격과 생산물, 인증기관의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4.3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유기농산물 수입은 EU가 인정한 국가(또는 지역, 생산단지)로부터의 수입에 한정된다.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이사회가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의결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때 수출품에 대해 이 지침이 정한 원칙과 동일한 생산방식을 적용했는지의 여부, 수출품에

그림 1 EU 유기농산물의 검사 체계(영국의 경우)



자료: 福士正博外(1992)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임

대해 EU 규칙이 규정한 인증제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된다.

수출국의 인증기관은 수출품이 EU 기준이 정한 것과 동일한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고, EU 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증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수출상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3.5 기타 농업환경프로그램

3.5.1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의 규제

가축분뇨 관련 지침 (91/676/EEC)은 가축분뇨에 의한 지표수, 강물, 연안해역지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되었다

⁸ 이 지침은 물의 질산염 농도가 50mg/l 이상이 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지침 공포 후 4년 이내에 가축사육밀도를 ha당 젖소 2두, 육우 4두, 번식돈 5두, 비육돈 16두, 산란계 133두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취약지구, 우량농업의 규정, 취약지구에 대한 지역사업계획 등을 결정하게 된다. 취약지구는 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환경정책은 토양환경을 원칙으로 하며, 가축사육은 국가가 토지면적당 정한 기준 내에만 가능하며 만약 이를 초과하여 사육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의 초기에는 수질보호가 주된 대상이었지만 최근에 가축분뇨에서 휘산되는 암모니아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가 추가되었다.

가축분뇨의 방출 제한은 각 회원국이 지닌 환경문제나 영농구조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개 방출량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특정기간 동안 가축분뇨의 방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회원국의 가축분뇨 방출량 허용기준은 <표 6>과 같다.

⁸ EU에서는 1980년에 이미 음용수에 대한 지침(Directive 80/778/EEC)에 따라 질산염에 대한 최대 허용 방출치가 50mg/l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단지 위생상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한 것은 아니었다.

표 6 EU 주요 회원국별 가축분뇨의 방출량 허용 기준, 1992

회원국	기준	질산칼륨(N)	인산(P_2O_5)
독일	총방출량	2.5 ME/ha(또는 200kg N/ha)	없음
	사육두수	유우 2.5두 번식돈 7.5두 비육돈 15.0두 산란계 250두 육계 750두	
프랑스	총방출량	목초 350kg N/ha 두류 0kg N/ha 기타 경종작물 200kg N/ha	없음
벨기에	총방출량	모든 작물에 대해 400kg N/ha	사료용 옥수수 200kg P_2O_5 /ha 경종작물 150kg P_2O_5 /ha 목초 175kg P_2O_5 /ha
네덜란드	총방출량	없음	목초 200kg P_2O_5 /ha 사료용 옥수수 250kg P_2O_5 /ha 기타 경종작물 125kg P_2O_5 /ha
덴마크	사육두수	소사육 농가 2.3 DE/ha 돼지사육 농가 1.7 DE/ha 기타 2.0 DE/ha 일반농가 1.7 DE/ha	없음

주: DE는 덴마크가축단위(Danish animal unit)이며, ME는 가축분뇨 단위(Manure unit)로 1 DE 또는 1 ME는 유우 1마리와 동일함.

자료: LEI-DLO, 1993.

3.5.2 농업환경 영향 평가프로그램

환경보호의 예방적 접근을 위하여 농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각 회원국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정 농업개발계획의 경우 그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농업부문에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농지 개량, 비경작지나 반자연상태 지역을 짐 약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사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초의 조림사업 및 토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간사업, 가금류 및 돼지 사육 설비, 연어 양식, 간척 사업 등이다.

3.5.3 농약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규제

EU의 농약제 지침에 따르면 농약제(plant

protection product)는 유해 유기물의 활동을 방지하여 식물을 보호하는 것, 식물 생장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하는 것, 식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장을 통제 및 억제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농약제 지침은 농약제의 유통 인가기준을 통일하고, 공동체내에서 사용가능토록 허가된 물질⁹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전체적으로 농약제 등록 기준을 조화시킴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농약제의 역내 유통을 방지하고, 농약제의 올바른 사용과 통합병충해 관리¹⁰를 의도한 것이다.

⁹. 유해한 유기물, 식물 및 식물생산물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해 작용하는 물질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의미한다.

¹⁰. 통합 병충해 관리(integral control)란 생물학적, 생물공학적, 화학적, 문화적 방법 또는

농약제 등록지침에 따라 농약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시장유통이나 역내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단 농약제에 대한 허가등록이 이루어지면 유효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인증기관에 의해 규정상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갱신된다. 등록허가는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는데 재고 처분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4. EU 농업환경정책의 전망

환경问题是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85년)과 몬트리올 의정서 (1989년 1월), 위험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1992년 5월 발효) 등이 이루어졌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산업발전에 의해 훼손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과 함께 생물종의 다양성 자체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EU의 농업환경정책은 공동환경정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지만 1993년 12월에 개최된 EU 환경이사회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개정 가입을 결정하는 등 공동체 차원의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재정적, 기술적인 문제가 제약조

육종방법 등의 적절한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화학 농약제의 사용을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역내 환경적 규제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90년대 농정의 방향을 '경쟁력 있고, 안전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농약, 화학비료, 암모니아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2000년까지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독일 농무부는 자연의 생명유지기능의 보전과 동물보호를 위해 토지, 물, 대기자원의 이용, 농업의 환경부하 감소, 농촌의 녹색공간 보호, 산림자원의 유지 및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환경이사회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될 제5차 농업환경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종전의 예방적 보호 차원이 아닌 지속적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정책목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7 참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는 점차 강화하는 한편, 각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조치들을 EU의 환경규칙이나 지침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EU 농업환경정책은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제환경 협정,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자연 및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품질위주의 식품소비경향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농업환경정책수단은 보조금 지불보다는 환경효과가 큰 반면 소득감소효과가 작고 시행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세나 비료 및 농약에 대한 과세 등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 특정 환경정책이 공동체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 목표로 간주됨

표 7 제 5차 환경실크 프로그램에 나타난 농업환경조치

목적	2000년까지의 목표	주요 내용	시행주체
○ 용수, 토양 및 종자를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에 필수적인 자연 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유지함	○ 지하수의 질산염 농도의 동결 또는 감축 ○ 질산염 허용치(50mg/l)를 초과하거나 또는 호수 및 바다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지표수의 범위 축소 ○ 토양내 유기질 농도의 안정 및 제고	○ 질산염 지침의 적용강화 ○ 가축단위, 사일로에 대한 지역별 방출기준 설정 ○ 인산사용량의 감축 ○ 환경법규의 준수를 조건으로 보상금 지불	연방정부 + 농업단체 연방정부 + 주정부 공동체 + 연방정부 공동체 연방정부 + 주정부 + 농업단체
○ 화학투입재를 생태계의 순환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감축시킴 ○ 질소질 비료의 투입과 토양 및 식물의 흡수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함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의 상당량 감축, 자연보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모든 지역에서 통합병충해 관리방식으로 전환	○ 농약 사용 및 판매 등록 ○ 농약 사용 및 판매 규제 ○ 통합관리 증진 및 생명농업 증진	공동체 + 연방정부 + 농업단체 공동체 + 연방정부 + 농업단체 공동체 + 연방정부 + 농업단체
○ 다양한 생물종 및 자연서식 생물을 보전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촌 환경 관리	○ 농지면적의 15%를 관리 계획대상으로 지정 ○ 위험에 처한 농촌지역을 계획관리	○ FEOGA의 재정 지원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환경보호구역 지정 ○ 멸종위험이 있는 국내동물종 보호 ○ 관개의 허가 조건 및 배수시설에 대한 주정부 지원의 재정비 ○ 농민교육 및 비교가능한 환경관리지역간의 상호방문 증진	연방정부 + 공동체 연방정부 연방정부 + 공동체 공동체 + 연방정부 + 주정부
○ 조림지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	○ 농용지를 포함한 조림지 증진 ○ 조림보호 증진	○ 기존 조림지의 재조림화 및 재생화 ○ 산불방지 개선책 마련	공동체 + 연방정부 + 주정부 + 산림소유자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2. 3.

으로써 의무분담 등 공동체 차원의 노력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직접적 규제를 통일된 EU 기준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 함축성

EU 농업환경정책에서 우리가 특히 참조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자 부담의 원칙하에 비료 및 농약사용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축산의 경우 가축의 사육두수를 초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농업투입재나 생산수단에 대해서 직접 규제하고 있는 점이다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규제, 농약제의 등록 지침 등).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농민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환경보호적 생산방식을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림사업지원, 농업

환경보호적 생산방식에 대한 지원) 이러한 범주의 정책수단들은 환경보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이라는 지역 관리정책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이 없는 한 농민들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별도의 농업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적 영농방식을 수행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조금 지불을 통해 환경보호적 농업을 담당하는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방식은 관행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설득력이 높다.

셋째, 안전한 농산물 및 상품의 역내유통을 확대하고 환경보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EU 내의 각국의 혼란된 환경기준을 통일하는 조치들도 있다는 점이다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규제, 농약제의 등록지침). 환경보전적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인증제에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도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상품의 불공정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농업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호적 역할을 중요시하여 과소지역의 농업환경 보호나 습지 및 소생태권의 유지, 전통적인 농촌환경의 보전 등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농민들에 대한 정규적, 비정규적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이나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농민들 스스로 환경보전형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농업환경프로그램에서는 농민들에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생산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봉순, "외국의 지속적 농업 추진동향," 오호성(외), 「농업과 환경: 지속적 발전의 과제」, pp. 201-222, 1993.
- 농협중앙회, "프랑스의 농업환경정책과 특징," 「농협조사월보」, 해외농업자료, 1993.9
- 대한무역진흥공사, 「EC 환경정책」, 무공자료 91-100, 1991.12
- 오세익, 강창용,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2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 和泉眞理, 「英國の農業環境政策」, 富民協會, 1989.
- 福士正博外, 「ヨーロッパ有機農業」, 家の光協會, 1992.
- 是永東彦, "フランスにおける農業環境政策の發足," 「のびゆく農業」, 819號, 農業調査委員會, 1993.
- 石井圭一, "フランスの農業・環境問題: 農業生産がもたらす硝酸塩汚染の問題から," 「農業總合研究」, pp. 19-42, 1994.
- Agra Europe, "EC Agreement on Agricultural Environment Proposals," E/6-E/7, June 26, 1992.
- _____. "CAP Reform Unlikely to Reduce Fertilizer Use," P/1-P/2, August 26, 1994.
- Alber, David G. and James S. Shortl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Policy Linkage and Reforms in the European Com-

- munity," *Amer. J. Agr. Econ.* 74, 1992, pp. 775-781
- Brouwer, F.M., F.E. Godeschalk, *Pig Production in the EC: Environmental Policy and Competitiveness*,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DLO), The Hague, April 1993.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wards Sustainability: A European Community Programme of Policy and Action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92) 23 final - Vol II, Brussels, 27 March 1992.
- _____,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93, 1994.
- _____,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om(91) 258 final, Brussels, July 11, 1991.
- De Wit, C.T.,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AP," *Euro. Review of the Agric. Econ.* 45(1988), pp. 283-296.
- The EC Committee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The EC Environment Guide*, 1994.
- Liapis, Peter S.,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Alternative Policies," *J. Agr. and Applied Econ.* 26(1), July, 1994, pp. 241-251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nvironmental Policy in the European Community* (4th edition), March 1990
- _____, "Council Regulation(EEC) No. 2078/92 of 30 June 1992 on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untrysi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215, 1992. 7.30.
- _____, "Council Directive of 15 July 1991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230/1, 1991. 8.19.
- _____, "Council Regulation(EEC) No. 2328/91 of 15 July 1991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Structur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218/1, 1991. 8.6.
- _____, "Council Regulation(EEC) No. 2092/91 of 24 June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218/1, 1991. 7.22.
- OEC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olicy Interaction: Recent Progress and New directions*, 1993.
- Tobey, James A., David E. Ervin(1991),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of the Single European Act," in USDA, EC 1992: *Implications for World*

Food and Agricultural Trade.
Washington, DC.
USDA-ERS, "EC Counters Effects of
Agriculture on the Environment,"
Western Europe Agriculture and

Trade Report. 1992. 12.
Wilson, Geoff A., "German Agrienvironmental Schemes-1. A Preliminary Review," *Journal of Rural Studies*, Vol. 10, No. 1, 1994, pp. 27-45.